

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

-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,
반갑습니다.
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강동길입니다.
- 오늘 여러 위원들님께 「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
뜻깊게 생각합니다.
-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「자연재
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른 ‘방재신기술’이 삭제되면서 2022
년 1월 제정된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른 ‘재
난안전신기술’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
하는 것입니다.

-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제2조(정의) 제2호 규정에서 혁신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신기술 중 ‘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방재신기술’을 ‘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재난안전신기술’로 변경하였습니다. (안 제2조제2호다목)

- 아무쪼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령 합치성을 높이고 명확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고려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- 감사합니다!